

의안번호	2203744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4.10.30.
추 계 번호	24C366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“장기요양의 날”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,0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총 2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기요양의 날 (안 제4조의2)	40	40	40	40	40	200	40

주: 본 추계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기념행사의 규모,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장기요양의 날 (안 제4조의2)	○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함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장기요양의 날 (안 제4조의2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, 기념행사의 개최 여부, 규모, 향후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의 “암 예방의 날” 행사를 위한 ‘국가암관리사업 홍보’ 사업비를 준용
 - 보건복지부는 「암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암 유공자, 암 관련 단체 관계자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음
 - 참고로, 전국 13개의 지역암센터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 행사만을 준용함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“장기요양의 날” 기념식을 개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
 - 보건복지부 “암 예방의 날” 기념식의 2024년 예산 4,0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“암 예방의 날” 행사비는 최근 3년간 4,000만원으로 고정되었음
- 개정안에 따라 “장기요양의 날”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,0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총 2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기요양의 날 (안 제4조의2)	40	40	40	40	40	200	40

주: 본 추계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결과로, 향후 기념행사의 규모,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